

세월 속 언론



글 함석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1. 시작하며

재난은 언제든 닥칠 수 있다. 재난은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기 어렵다. 언론 역시 미리 보도를 준비할 수 없다.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재난 상황을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알려야 할 책무는 역시 언론에 있다. 재난 상황이 파악된 후에는 사고 원인과 대책에 대한 심층 취재를 해야 한다. 이 역시 언론의 본분이다. 그런데 이번 해난사고 때는 시초부터 언론에 대한 비판 일색이었다.

신속성과 정확성, 이 두 가지야말로 기자들이 취재현장에서 늘 마주하는 선(善)이다. 둘 다 선(善)이긴 하지만, 취재 현장에서 둘 다 동시에 챙기기는 쉽지 않다. 현장을 뛰는 기자나 기사를 골라서 편집하는 데스크나 누구도 이 강요된 선택 앞에 마음이 편



침몰하는 세월호 모습(출처 : 서울신문, 「기적은 없는가...」, 2014년 4월 17일자 1면)

할 수 없다.

“기자는 사건의 맨 앞에 한 다리를 들고 불안하게 서 있고, 법관은 사건의 맨 뒤에 골치가 아파서 머리를 싸매고 앉아 있다.” (윤재윤 외 1, 언론분쟁과 법, 23쪽)

모든 말을 다 들어주고 모든 증거를 다 받아주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연된 권리는 권리가 아니다’라는 말에 투영된 것처럼 재판 역시 신속을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대비해 보면 취재 현장이나 법정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 언론 문제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나로서도 이번 재난보도를 보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그래도 언론이 자성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고 기자들이 여전히 현명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MBC 5월 12일 기자 121명 세월호 보도 반성 성명서, 5월 15일 유가족 만찬 KBS 기자들 고개 숙이고 눈물로 사죄, 중앙일보 5월 16일 “세월호 부정확한 보도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언론 본연의 모습을 되찾겠다고 다짐하고 있어서 그 반성이 헛돼 보이지 않는다.



중앙일보의 세월호 보도 관련 사과보도(출처: 중앙일보, 「세월호 부정확한 보도 사과드립니다」, 2014년 5월 16일자 2면)

이번 사건에 대한 언론의 태도를 보면서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 때가 떠올랐다. 그때도 무리한 취재, 속도 경쟁에 대한 비판이 드셨다. 한국기자협회는 그 비판에 고개를 숙이고 2003년 재난보도준칙을 공표했다. 이번 재난을 계기로 한국기자협회는 5월 현재 다시 한 번 재난보도준칙을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과거에도 비슷한 반성이 있었고 보도 기준까지 정립하지 않았느냐고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 보인다. 기자들이 이번처럼 대구모로, 그리고 언론사 구분 없이 차례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인 적은 없었다.

그리고 나는 그 진정성을 믿는다. 그래서 희망이 보인다. 아까운 어린 생명들이 꺼져 갔고, 그들을 그렇게 만든 부끄러운 어른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진정성이기에, 과거 그 어떤 재난보다도 무게감이 가슴을 깊숙이 눌러온다. 그냥 허튼소리로 들리지 않고, 나 역시 아픈 세월 속에 반성하면서 어렵게 이 글을 쓴다.

2. 언론이 추구할 가치들

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언론을 바라본다.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과 ‘인격권 보호’라는 측면이다. 두 가지 모두 헌법이 인정하는 중요한 가치이다. 서로 공존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실은 두 가치가 조화를 이룰 때에 언론의 자유가 더 확충된다. 바른 보도를 하는 언론이 인격권 침해에 따른 책임을 걱정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과정을 이미 경험했다.

하지만 두 가치는 종종 충돌한다. 미디어 발달로 언론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1980년대 후로 줄곧 두 가치가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다. 법원 판결 역시 어떤 때는 언론의 자유 쪽으로, 어떤 때는 인격권 보호 쪽으로 기울었다. 그래도 우리 역사에서 지금 이 순간이 이 두 가치의 균형이 제일 조화롭게 이뤄지고 있는 때라고 생각한다.

20세기 초중반까지 언론의 자유보다는 침해에 대한 보상이 법의 관심이었다. 1890년 미국에서 Warren과 Brandeis가 ‘The Right to Privacy’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미국에서 프라이버시(privacy) 침해를 독립한 불법행위(torts)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기 시작했고, 유럽에서는 명예, 초상, 성명 등의 인격적 권리를 포괄하는 인격권이라는 개념을 상정하고 그 인격권 침해를 불법행위로 구성했다. 쉽게 말해서 법이 바라보는 언론은 ‘공표하지 말라’는 금지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20세기 초중반까지 끊임없이 전쟁이 이어졌고 전쟁 후에는 냉전이 이어졌기 때문에 언론을 자유보다 금지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당시로서는 자연스러웠을 수도 있다. 전쟁과 냉전이 언론을 위축시켰다.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사상의 자유 시장(free trade in ideas)’이라는 말은 1919년 미국연방대법원의 Holmes 대법관이 이야기한 소수의견에 불과했다. 1960년대 반전 분위기와 냉전에 대한 반성으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다양한 법이론, 그리고 화려한 수식어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위축 효과(chilling effect), 숨 쉴 공간(breathing space) – 언론의 자유라고 하면 지금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들이 이때부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언론의 자유, 인격권 보호에 대한 연혁을 말하는 이유는, 재난보도라는 영역도 우리

에게는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할 영역이라는 점을 말하고 싶어서다. 나 역시 선지자적 견지에서 무슨 기준을 제시할 입장이 되지 못한다. 이 글을 부탁받으면서 거창한 뭔가를 꺼내놓을 재주는 없고 예전에 썼던 질문에 감상 정도를 엿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주로 초상권에 대해 과거에 썼던 글을 정리하고 간단히 결론을 맺고자 한다(줄고는 ‘초상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법리 전개’, 법조, 2006년 12월).

3. 법의 기준

초상권 침해가 되느냐, 아니냐에 대한 기준은 다양하다. ‘초상’이라는 개념도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 글에서 쓰는 초상의 의미는 재난보도와 관련해서 쓴다는 점을 고려해서, 보도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도의 특성까지 모두 포함하는 아주 넓은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바란다. 단순히 얼굴, 이름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초상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촬영거절권, 공표거절권, 그리고 초상영리권이다. 영리 목적으로 재난보도를 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이 가운데 초상영리권은 접어두기로 한다. 주로 촬영거절권과 공표거절권이 문제 될 것이다.

1) 촬영·작성 단계

촬영거절권부터 말하자면, 촬영하고 공표되지 않더라도 사람은 무단으로 촬영되는 것만으로도 고통을 느끼는 경우가 있으므로 함부로 촬영되는 것, 즉 무단촬영 자체만으로도 초상권 침해가 된다고 보고 정립한 개념이다. 인터넷과 저장수단의 발달로 인해 촬영을 하면 언제 어디서 공표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더 커졌다. 이런 시점에 갈수록 이 권리는 중요해지고 있다. 다만 촬영거절권에 대해서는 촬영되는 것만으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경우가 사람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침해 여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주관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봄날 오후 야구경기장을 찾아 야구경기를 즐기는 관객은 자신이 환호하는 모습이 방송카메라에 촬영되었다고 해도 그 자체만으로 고통을 느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그 관객이 평일에 무단결근하고 경기를 관람하고 있었다면 촬영만으로도 고통을 느낄 여지가 있다. 또한, 공원에서 가족사진을 찍는 사람은 일단 왕래객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고, 그 후 왕래객의 목시, 혹은 명시의 승낙이 있어야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다면, 촬영하는 사람의 촬영에 대한 이익(자유롭게 공원에서 가족사진을 찍을 자유)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결과를 낳는다. 결국, 촬영거절권으로서의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기준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먼저 사적인 공간에서 무단 촬영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초상권 침해가 된다. 집에서 활동하는 모습, 출입이 통제된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경우처럼 누군가 그 모습을 촬영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사적 공간에서의 촬영은 사적인 영역에 대한 통제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것이므로 촬영 자체만으로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공원, 개방된 등산로, 스포츠 경기장, 시위·집회 현장 등 누구나 촬영할 수 있고, 촬영을 예상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의 촬영은 촬영거절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이론 있음). 초상권자가 우연한 기회에 공공장소에서 공적인 장면의 일부로서 통상 기대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촬영의 대상이 된 것이라면 촬영거절권으로서의 초상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공공장소에서 촬영하는 것은 이미 공개된 사항들을 기록하는 것이고, 누구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일어난 일을 묘사하거나 기록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공공장소라도 사적인 활동이 있을 수 있고 사적인 사항이 노출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봐서 공공장소에서의 공공성보다 사적인 사항에 초점을 두고 촬영한 경우라면 촬영거절권으로서의 초상권 침해가 문제 될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 유별나게 여자 다리를 찍는 사람을 생각해 보기 바란다. 또 한 가지, 공공장소의 촬영이라도 초상권자가 촬영을 인지하고 촬영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촬영거절권으로서의 초상권이 작용한다. 이 경우에는 촬영에 대한 정신상 고통이 외부에 표출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2) 공표 단계

공표거절권은 초상권의 핵심이고, 기준이 명확한 편이다. 초상권 침해 여부는 초상이 공표된 후에야 문제 되기 때문이다.

공표거절권은 주로 부정적인 보도와 관련해서 문제가 된다. 부정적인 보도에 동의 없이 초상을 사용한 이상 초상의 촬영이 평온하고 공연하게 이루어졌다고 해도 초상권 침해가 된다. 따라서 공공장소에서 이미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혹은 이미 공표된 자료라고 해도 부정적인 보도와 함께 사용한 경우 공표거절권으로서의 초상권 침해가 된다.

공공장소에서 통상 사용 가능한 방법으로 얻은 초상을 비방 목적 없이 시사보도에 사용하는 것을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 공개된 장소에서 통상 사용 가능한 방법으로 획득한 정보를 시사보도에 사용하는 것은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해서 볼 수 있는 공적인 기록이나 이미 공개된 자료를 공표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사람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일상생활의 모습이 공개되고 생활상이 어느 정도 노출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집에서조차 이웃에게 노출되는 일상이 있다. 논의는 있지만, 공공장소에서 통상 사용 가능한 방법으로 얻은 초상을 비방 목적 없이 시사보도에 사용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다만 촬영거절권에서 말했던 예외, 말하자면 공공장소라도 공공성보다 사적인 사항에 초점을 두고 촬영한 경우라면 촬영거절권으로서의 초상권 침해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점과 공공장소라도 초상권자가 촬영을 인지하고 촬영을 거절했다면 공표까지 거절한 취지로 봐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3) 동의

인격권의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1호). 동의는 명시적 동의가 제일 확실하지만, 추정적 동의, 암묵적 동의도 가능하다. 실생활에서 동의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어떤 경우에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과거에 많은 선례가 있었다.

4. 적용과 하고 싶은 말

논점과 장소를 좁혀서 생각해 본다. 팽목항과 진도실내체육관은 공공장소일까, 사적인 공간일까. 그 어느 쪽이라고 단정하기 쉽지 않다. 전체적으로는 공공장소와 사적인 공간



유가족이 머문 진도체육관의 모습(출처: 미디어오늘, 「세월호 35일 "립글로즈 바르고 나갔던 가시내가 왜 안와"」, 2014년 5월 21일자)

이 혼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 항구, 실내체육관은 공공장소다. 그래서 그곳에 드러난 유가족이 모습, 구조를 기다리는 가족의 모습은 공공성을 띤다. 하지만 이불을 깔고 잠을 자고 식사하는 공간은 사적 영역이다. 이처럼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혼재하지만, 앞에서 본 기준에 비춰보면 그 구분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 신속성이라는 가치를 내세워 그 기준을 깨지 말아야 한다.

가족이 오염하는 모습, 친구의 죽음을 알고 혼절하는 모습은 어떤가? 공적인 슬픔을 전파하고 재난 후유증을 알린다는 측면에서 공공성을 가진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사적인 영역이 더 강하게 지배한다. 아무리 공공장소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오염하는 모습, 혼절하는 모습은 그 사람 개인에 관한 일이다. 이 부분은 법리 이전에 인간에 대한 애정이라는 측면에서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선정적인 장면이나 격양된 기자의 목소리보다는, 현장을 지키며 눈물을 감추는 경찰의 모습, 시신을 운구하는 발자국 소리, 불안한 부모의 얼굴,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부모의 흐느낌만으로 현장감을 전했던 지난 4월 20일 CNN 보도를 주목하게 된다.

그래도 여전히 언론은 '신속'에 대한 압박감을 떨칠 수 없다. 다양한 매체에서 시각, 음성, 그래픽까지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된 현대 세계에, 신속의 압박감은 그 강도를 더해 가는 것 같다.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언론이 대규모 인명 피해를 야기한 재난보도에서 신속과 정확 가운데 어떤 선(善)을 우선



세월호 관련 CNN 보도(CNN, 「Children's bodies recovered from ferry」, 2014년 4월 20일, <http://edition.cnn.com/video/data/2.0/video/world/2014/04/20/nr-lah-pkg-ferry-bodies-recovered.cnn.html>) 캡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답을 찾기가 쉽지도 않다. 하지만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대구모 인명 피해, 그 때문에 온 국민이 마음 아파하는 재난 보도에는 속도보다 정확성을 우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서술형 문자가 아닌 직관적인 사진, 영상으로 현장을 고스란히 전달하는 세상에서 전달의 속도감과 감정의 현장성 때문에 오보와 트라우마는 예전에 비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파급력을 가진다. 그리고 그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 이 점을 상기해야 한다. 속도 경쟁보다 정확을 기했으면 한다.

끝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사실 진리는 단순한 곳에 있다. 여러 기준 중에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기준은 '동의'다. 법은 '동의(同意)'라고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공감(共感)'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겠다. 현장에서 기자들이 아픔을 겪는 재난 가족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공감을 얻는다면 앞에서 이야기한 복잡한 법리 자체를 머릿속에 둘 필요가 없다. 명시적 동의건, 추정적 동의건, 암묵적 동의건 모두 공감(共感)이라는 말 속에 답이 있다.

아이들이 우리에게, 특히 언론에 전한 메시지는 자명하다. 기자들이 성명을 통해 반성하고, 영정 앞에서 눈물 흘린 이유도 바로 그 아이들이 우리에게 보낸 메시지 때문이었다. 나 역시 부끄럽다. 이런 글을 쓸 자격이 있는지 계속 되물었다.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번 재난은 우리 모두에게 큰 전환점이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만들어가야 한다는 점이다.